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⁶
A61K 7/021

(11) 공개번호 특 1995-0000134
(43) 공개일자 1995년01월03일

(21) 출원번호	특 1994-0012536
(22) 출원일자	1994년06월03일
(30) 우선권주장	P 43 18 576.2 1993년06월04일 독일(DE)
(71) 출원인	메르크 파텐트 게젤샤프트 미트 베쉬랭크터 하프통 위르겐 호이만, 라인 하르트 슈틀러
	독일연방공화국 64293 다클라트 프랑크푸르터 스트라세 250
(72) 발명자	테클라 쿠르츠 독일연방공화국 64293 다클라트 프朗크푸르터 스트라세 250 지글린데 스타 //
	독일연방공화국 64293 다클라트 프朗크푸르터 스트라세 250 안드레아 스플러
	독일연방공화국 64293 다클라트프朗크푸르터 스트라세 250
(74) 대리인	김창세, 김영, 장성구

심사청구 : 없음**(54) 피부 착색 제제****요약**

본 발명은 화장품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중에 자가-그을림(self-tanning) 성질을 지닌 하이드록시카보닐 화합물, 및 피부에 밀착하는 하나 이상의 착색제를 함유하는 피부 착색 제제에 관한 것이다.

형세서

[발명의 명칭]

피부 착색 제제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청구항 1**

피부에 밀착하는 하나 이상의 착색제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중에 자가-그을림 성질을 갖는 하이드록시카보닐 화합물을 함유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가-그을림 성질을 갖는 화합물이 디하이드록시아세톤 또는 메틸 글리وك살임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피부에 밀착하는 착색제가 적색 착색제임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피부에 밀착하는 착색제가 에오신 유도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피부에 밀착하는 착색제가 에오신 G 또는 에리쓰로신 I임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에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전체 제제를 기준으로, 각각 0.1 내지 10, 바람직하게 1 내지 6종량%의 피부 착색 화합물 및 0.01 내지 0.1, 바람직하게는 약 0.05종량%의 피부에 밀착하는 하나

이상의 착색제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피부에 밀착하는 착색제와 피부 착색 화합물간의 중량비가 0.01 이상인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화장품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가 물; 물과 하나 이상의 유기 성분의 혼합물; 및 지방과 하나 이상의 유기 용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그룹중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성분 또는 용매가 단쇄 C₁₋₄알콜, 장쇄 C₁₀₋₁₈모노알콜, C₂₋₈폴리알콜, 알킬렌글리콜, 글리콜 에테르, 알칼 아세테이트, 에틸렌 C₁₋₃모노알킬 에테르 및 포화된 C₁₄₋₁₆지방산의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그룹중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지방이 식물성 및 동물성 오일, 무기오일, 지방산, 지방알콜, 지방산 에스테르 및 지방산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포함하는 그룹중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지방이 식물성 및 동물성 오일, 무기오일, 지방산, 지방알콜, 지방산 에스테르 및 지방산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포함하는 그룹중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pH가 2 내지 10, 바람직하게는 3 내지 6임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자외선-A 및/또는 자외선 -B 차단용 UV 필터를 하나 이상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계면활성제, 보습제, 연화제, 유백제, 다하이드록시인돌 유도체, 비타민, 향료, 겔화제, 종점제, 안료, 피부에 밀착하는 착색제의 색조를 차단하는 착색제 또는 방부제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안료가 특수-효과 안료, 특히 진주빛 안료, 또는 투명안료임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착색 제제.

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의 제제를 피부에 적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그을림 색조와 유사한 색조로 피부를 착색시키는 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